강진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124호

# 2024년도 강진군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4년도 강진군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강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 Ⅰ 선발예정인원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비 고 |
|---|---|---|---|---|
| 9급 | 전 산 | 데 이 터 | 3명 | |
| 9급 | 시 설 | 일반토목 | 12명 | |
| | | 건 축 | 5명 | |

## Ⅱ 시험방법 및 일정

### 1.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서류전형·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1선택형)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
| 9급(데이터) |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 40분 |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
| 9급(일반토목)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60분 | |
| 9급(건축)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60분 | |

※ 합격자 결정 : 과목당 4할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 합격자 결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2. 시험일정

| 응시원서<br>접수기간 | 시 험<br>구 분 | 시험장소<br>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br>발표일 |
|---|---|---|---|---|
| 2024.2.6.(화) ~<br>2.8.(목) / 3일간 | 필 기 | 2024.2.13.(화) | **2024.2.18.(일)** | 2024.2.20.(화) |
| | 면 접 | 2024.2.20.(화) | **2024.2.23.(금)** | 2024.2.27.(화)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http://www.gangjin.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나. 성별: 제한없음**

**다. 거주지: 제한없음**

**라. 관련 자격증**(기준일: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참고**[붙임 1]

**마.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12.31.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4.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

※ 자격종류 및 가산비율,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정보처리 분야,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공통적용 가산점 특전 폐지

###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061-430-3709) 등으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061-430-3713)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5. 응시원서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가.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붙임2)**을 출력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2024. 2. 6.(화) ~ 2. 8.(목) 09:00~18:00 (12:00~13:00 제외) / 3일**

다. 접수장소 :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본청 2층)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1)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우 59028,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
- 등기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우편송부(회송용 봉투에는 등기우표 부착, 수신인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우체국 통상환증서 수취인(받을분)은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으로 작성

마. 제출서류(붙임2)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1호)

2) 응시원서(별지 2호) 1부

- 증명사진 별도 제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5*4.5) 2매)
- 응시수수료 : 5,000원
  - 방문접수 : 강진군 수입증지 부착(강진군청 1층 민원봉사과 구입)
  - 등기우편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5,000원)

3)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주소이력 전체)

5) 이력서 1부(별지 3호)

6) 자기소개서(별지 4호)

7) 경력증명서(별지 5호)

8) 자격조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6호)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7호)

10)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해당자만 제출)

## 6.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고,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스티커 사용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 · 거주지 · 가점 · 학력 · 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격증 · 면허증 등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5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타.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파.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강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하.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061-430-3713)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진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공고/고시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1]

< 전라남도 인사규칙 >

##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

| 직렬 | 직류 | 대상 자격증 | |
|---|---|---|---|
| 전산 | 데이터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
|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 |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 | |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지방공무원임용령>

##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

###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직렬 | 직류 | 대상 자격증 | |
|---|---|---|---|
| 시설 | 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 기능사(2)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용토목제도, 측량 |
|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 |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 기능사(2)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안의 숫자는 직류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